

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3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) ① (생략)</p> <p>② 「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최근 2년간 「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」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. 다만,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.</u></p>	<p>○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에 대해 월별납부 승인요건 신설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